|  |  |  |
| --- | --- | --- |
|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비부과 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0]1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내외자기업과 개인에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비 일률 부과제도에 관한 통지》(국발 [2010] 35호)의 결정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1월부터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 국적 개인(이하 ‘외자기업’)에게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를 부과징수 하기로 한 바,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외자기업에게 2010년 12월 1일(1일 포함)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이하 ‘3세’)에 대해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를 부과한다. 외자기업의 2010년 12월 1일 이전 납세의무가 발생한 ‘3세’에 대해서는 도시보소건설세와 교육비를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각급 재정, 세무기관은 서비스 의식 및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징수관리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정책집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성실히 연구하여 적적하게 해결하고, 중대한 문제의 경우 즉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0년 11월 4일 |  | **关于对外资企业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0]103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国务院关于统一内外资企业和个人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制度的通知》（国发[2010]35号）决定，自2010年12月1日起，对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及外籍个人（以下简称外资企业）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对外资企业2010年12月1日（含）之后发生纳税义务的增值税、消费税、营业税（以下简称“三税”）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对外资企业2010年12月1日之前发生纳税义务的“三税”，不征收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　　各级财政、税务机关要增强服务意识，加强政策宣传，做好征管工作。对政策执行中遇到的问题，要认真研究，妥善解决，重大问题及时上报财政部、国家税务总局。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〇一〇年十一月四日 |